



【검토보고서】

2014. 9. 21(월)
제 261 회 임시회

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변경(2차)(안) 검토보고서



【전문위원 최영인】

2015년도 기금운영계획변경(2차)(안) 검토보고

□ 전문위원 최영인 입니다.

201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(2차)(안)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.

-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(2차)(안)은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 제2항¹⁾에 따라 기금운영계획을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변경사항과 검토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.

□ 먼저, 총괄기금 운용계획입니다.

- 양주시에서 운영중인 기금은 지방채 조기상환 운용기금 등 8개이며 운영계획을 변경하고자 제출된 기금은 통합관리기금, 재난관리기금, 주민지원기금 등 3개 기금입니다.
- 운영계획 변경시 기금운용 규모는 63억원에서 102억원으로 39억원 증가하며 세부적으로는 통합관리기금이 15억원에서 35억으로 20억원, 재난관리기금이 34억원에서 53억으로 19억원이 각각 증가하는 반면 주민지원기금은 4억 9천만원에서 4억 7천만원으로 2천만원 감소합니다.
- 통합관리기금 조성액이 101억원에서 81억으로 감소함에 따라 2015년도말 전체 기금조성액은 총 231억원에서 211억으로 20억원 감소합니다.

1)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《 지방채 조기상환 운용기금 운영총괄 변경안 》

(단위 : 천원)

기 금 명	설치년도	2015년 운용규모	조 성 계 획		
			당 초	변 경	증 감
계		10,177,528	23,125,782	21,056,698	△2,069,084
체육진흥기금	1994년	62,520	2,400,017	2,400,000	△17
재난관리기금	1996년	5,269,402	7,837,083	7,693,996	△143,087
노인복지기금	1997년	67,006	1,224,876	1,224,876	0
지방채조기상환운용기금	2001년	84,448	1,209,085	1,209,085	0
식품진흥기금	2003년	137,836	127,308	141,109	13,801
통합관리기금	2007년	3,524,916	10,154,998	8,145,419	△2,009,579
옥외광고정비기금	2009년	562,919	65,287	42,000	△23,287
주민지원기금	2011년	468,481	107,128	200,213	93,085

□ 다음은 기금별 운영계획 변경현황입니다.

□ 먼저, 통합관리기금입니다.

- 본 기금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다른 기금의 여유자금 예탁금, 일반 및 특별회계 전입금, 기금운영 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하며
- 2014년말 현재액은 양주시에서 운영하는 5개 기금의 여유자금 예탁금 110억원을 포함한 113억원으로 이 중 101억원은 일반회계에 예탁하여 왔으나 감사원으로부터 “재난관리기금은 설치목적상 타 기금 등에 예탁하는 것이 부적절”하다는 지적에 따라 일반회계 예탁금중 20억원을 상환받아 재난관리기금 예탁금의 원금 일부를 상환하고자 하는 것으로

- 당초 상환하고자 편성하였던 12억원을 포함할 경우 재난관리기금으로의 총 상환액은 32억원이며 상환후 예탁잔액은 30억원으로 감소하고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에 예탁한 금액의 잔액 또한 81억원으로 감소합니다.

《 타 기금의 통합관리기금 예탁현황 》

(단위 : 천원)

계	지방채조기 상환기금	체육진흥기금	식품진흥기금	노인복지기금	재난관리기금
10,973,081	1,124,637	2,400,000	78,090	1,186,870	6,183,484

□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.

- 본 기금은 재난발생시 신속한 응급대책 및 복구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7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최근 3년 동안의 「지방세법」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 이상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- 2014년말 현재액은 71억으로 이 중 여유자금 62억원은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여 왔으나 감사원으로부터 “기금 성격상 타 기금 등으로의 예탁은 부적절하다는 지적”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였던 기금 62억원중 상환이 가능한 32억원은 우선 상환받고
- 2014년 결산 결과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이 계획보다 증가하여 일반회계로부터 기 전입받은 금액이 재난관리기금 법정 적립기준액에 미달함에 따라 부족액 22백만원을 추가로 전입받았습니다.
- 기금운영 계획이 변경될 경우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 금액은 30억원으로 축소되며 미 회수된 예탁금은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회수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.

□ 다음은 자원회수시설 주민편의기금입니다.

- 본 기금은 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에 따라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시의 출연금과 기금 운용 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합니다.
- 2014년말 현재액은 1천 6백만원이며 2015년 예상 수입은 5억원으로 예측하였으나 서울시의 생활폐기물 반입량이 감소됨에 따라 3천만원이 감소한 4억 7천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.
- 지출계획에서는 4개 사업을 축소 또는 일몰하여 2억 3천만원을 절감하였으며 절감액중 1억 1천만원은 공동시설 유지관리비의 1개 사업비로, 9천만원은 예치금으로 각각 편성하고 잔여 3천만원은 지출계획에서 감소시켰습니다.
 - ▷ (일몰) 노인 건강증진비 △52백만원
 - ▷ (일몰) 경로잔치비(마을) △16백만원
 - ▷ (일몰) 공동작업 경비(마을) △28백만원
 - ▷ (축소) 폐기물처리시설 견학경비 △134백만원(156백만원 → 23백만원)
 - ▷ (신규) 꽃길 가꾸기 및 제초작업 경비 5백만원
 - ▷ (확대) 공동시설 유지관리비(마을) 110백만원(42백만원 → 152백만원)

□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검토보고입니다.

- 금번에 변경된 기금 운용계획은 타 기금에 예탁하였던 재난관리 기금의 일부를 환수하고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사업을 재정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

- 운용계획이 변경될 경우 재난관리기금에서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 62억원중 32억원이 회수되거나 감사원의 지적과 같이 재난관리기금은 즉시 사용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잔여 30억도 빠른 시일내에 회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.
- 또한, 주민지원사업기금의 경우 예산으로 집행하는 3사업비 2억 1천만원은 삭감하고 민간경상보조사업 2개 사업 1억 1천만원을 증액하였으나 민간에 보조하는 예산은 목적사업대로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도·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.
- 이것으로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(2차)(안)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